

## 2.3.3 산업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정	1998. 02. 24.
개정	1999. 08. 27.
개정	2000. 04. 21.
개정	2002. 03. 08.
개정	2003. 04. 11.
개정	2007. 03. 01.
개정	2007. 04. 11.
개정	2007. 10. 17.
개정	2007. 11. 27.
개정	2011. 02. 17.

제1조(목적)본 규정은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논문의 제출자격)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자는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각 과정의 소정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까지 취득 예정인 자로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자

제2조의 2(학위자격시험)석사학위를 청구하려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앞서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조의 3(학위자격시험 시기)학위자격시험은 년 2회, 4월과 10월중에 시행하되 일자는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조의 4(외국어 시험) ① 응시자격은 2개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이상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외국어 과목은 영어과목으로 하며,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채점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된 자는 재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④ 외국어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원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의 5(종합시험) ① 응시자격은 18학점이상 취득하고, 3개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②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중 3과목이상으로 하며, 그중 1과목은 필수 과목이 포함 되도록 한다.

③ 채점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된 과목은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는 원서(서식2)와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의 6(학위자격시험위원)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과목별 시험위원을 위촉하며, 위촉된 시험위원은 출제와 채점을 주관한다.

제3조(학위종별) 석사학위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자격시험에 통과한 자로서 논문을 제출하거나 추가로 6학점을 취득한 한자(작품 제출 포함)는 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구분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설 치 학 과	수여학위	전 공
경 영 학 과	경영학석사	경영학, 유통학, 회계학, 국제문화경영
사 회 복 지 학 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
컴퓨터정보공학과	공 학 석사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행 정 학 과	행정학석사	행정학, 군사행정학
환 경 공 학 과	공 학 석사	환경공학
간 호 학 과	간호학석사	간호학
사 회 체 육 학 과	체육학석사	체육학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시각디자인학
조 리 과 학 과	이 학 석사	조리학
안 경 광 학 과	이 학 석사	안경광학
뷰티코디네이션학과	미용학석사	뷰티코디네이션학

제4조(논문연구계획서)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학기 초에 논문연구계획서(서식3)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작성)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 초록을 첨부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단, 학위 청구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학위논문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 이전에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 2학기 이상 논문작성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7조(논문제출) ①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학위 논문심사원(서식4)에 지도교수의 학위청구 논문제출 추천과 소정의 심사료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작성요강에 따라 작성하고, 예비심사(공개발표)용 학위청구 논문 제출 시에는 논문 3부와 학위청구 논문개요서(서식5) 3부를 소정기일내에 제출하고, 심사완료시에는 완성논문 10부(심사원본 2부, 하드본 3부, 소프트본 5부, 디스켓 1부)와 논문요약(서식6) 2부를 소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예비심사에서의 수정요망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본 심사를 받은 후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소정기일안에 논문 인쇄동의서(서식7) (지도교수 확인)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2(논문제출 시기) 논문제출시기는 5월 또는 11월로 하고, 석사과정 수료 후 논문제출 시한은

3년(군복무기간 제외)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승인할 수 있다.

제8조(논문심사 구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는 예비심사(공개 발표)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심사위원 자격)심사위원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 한다.

제10조(심사위원 위촉) ① 주임교수는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상을 대학원장에 추천하여야 하며, 1인의 심사위원에 심사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모든 심사일정과 장소를 대학원장에게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고, 그 중 지도교수가 아닌 1인을 심사위원장(주심)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맡으며, 심사는 심사위원 2인이상찬성으로 평가하며, 그 심사결과를 대학원 서식에 의거 대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예비심사: 공개발표) ①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하에 1회 이상 공개논문 발표회를 가져야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 결과(판정은 가, 부로 한다.)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비심사시 심사위원 및 참관인은 논문발표자에게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본 심사) ① 학위 논문의 심사평가는 심사위원별 “가” 또는 “부”로 판정하며 통과여부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②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심사위원은 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두시험을 병행하며, 논문심사와 구두시험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③ 본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 결함이 없는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때 학위논문이 심사상 필요한 부분,역본 또는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④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13조(재심사) 제출된 논문이 심사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이를 보완 작성하여 1학기 경과 후 전항의 서류를 다시 갖추어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심사결과)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후 6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논문심사위원 심사비) 논문심사위원회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16조(학위의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학위논문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재적위원2/3이상의 의결로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수여의결(서식8)된 논문은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학위수여)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사학  
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를 별지서식(2, 2-1)에 의한 학위기로서 전공해당 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2〉 대학원시험응시원서

대학원시험 응시원서			사진
접수번호			
학 과		과 정	석 사
주민등록번호	성 명		
입학년도	연 락 처		
등록회수	현재취득학점		( )학점
응시과목	어학시험	어학시험응시회수 종합시험응시회수	1차.2차.3차
	종합시험		1차.2차.3차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년    월    일</p> <p style="margin: 10px 0 0 100px;">지원자 : (인)</p> <p style="margin: 10px 0 0 100px;">주임교수 : (인)</p>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10px 0 0 100px;">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장 귀하</p>			

### 접 수 증

접수번호		학 번	
학 과		성 명	
응시과목	학위논문 제출을 위한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함		
어학시험	종합시험	년    월    일	
		접수자	(인)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장



논문 연구계획 내용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일정

참고문헌



<서식 5> 석사학위청구논문요지(개요)서

## 석사학위청구 논문요지(개요)서

학과 성명 \_\_\_\_\_ 인

지도교수 \_\_\_\_\_ 인

논문제목: \_\_\_\_\_

논문요지: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인)



## 석사학위 논문 인쇄 동의서

1. 논문제출자:                      학과    학번                      성명                      (인)
2. 논문제목:

위 논문은 석사학위 본심사(논문심사 및 구술고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완성논문으로서 타당하므로 인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논문지도교수 성명:                      (인)

학과주임교수 성명:                      (인)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장 귀하

초 당 대 학 교  
산업대학원위원회의결서

석사학위 논문 제출자:                      학과                      전공 학번                      성명

위 사람에 대하여 논문심사 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할 것을 의결함.

1. 결의일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참석위원 : 참석                      명, 불참                      명

대학원 위원회

위원장	①	인	원	①
인 원	①	인	원	①
인 원	①	인	원	①
인 원	①			
인 원	①			
인 원	①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장 귀하

# 학위청구논문작성요령

## 논문 작성방법

제1조(논문작성) 논문의 체제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① 표지
- ② 내지
- ③ 인준서
- ④ 목차
- ⑤ 도표목차
- ⑥ 국문초록
- ⑦ 본문
- ⑧ 참고문헌
- ⑨ 영문초록
- ⑩ 부록

- ※ 1. 인문사회계의 경우 각주는 해당내용이 들어있는 면 밑부분에 기재한다.
- 2. 목차 앞에 사사는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

제2조(논문제출) 심사용 논문 4부는 최종제출용(인쇄본)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한다. 단, 심사용 논문 4부의 표지와 인준서는 활판 인쇄하여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흑색 잉크 또는 볼펜으로 작성하며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논문의 규격)

- ① 심사용이나 최종제출용논문 모두 4×6배판(가로 19cm×세로 26cm)을 기준으로 한다.
- ② 표지와 인준서(내면2) 및 초록은 별지의 논문규모에 맞추어 작성한다.
- ③ 논문은 반드시 일면 인쇄하도록 하며, 본문의 인쇄는 청타 또는 컴퓨터(10 포인트 활자)로 인쇄하여야 한다.
- ④ 본문의 면당 지수는 37자 × 26행을 기준으로 한다.
- ⑤ 표지는 연갈색(네자크기)표지를 사용하고 제본은 좌철한다. 단, 금박 양장본 2부의 표지는 청색으로 한다.

제4조(학위신청서류)

- ① 추천서 1부(소정양식)
- ② 성적증명서 1부
- ③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4부
- ④ 심사통과 후 최종제출논문 소프트 카바 10부(인쇄본) 및 금박양장 논문 2부

주의 : 금박양장본 2부에 있어서,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성명은 반드시 자필이어야 한다.  
(단, 소프트카바 10부의 경우는 인쇄)